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26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정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3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5호)을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19.4.22.)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정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시 주차요금 할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 규정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호라목)
- 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과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4 및 별도5)
-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제7조제1항제6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주차장의”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도 5 〉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



나눔카
전용주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p> <p>1. (생략)</p> <p>가. ~ 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 5. (생략)</p> <p>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u>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u>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7.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u>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 ----- <u>공영주차장</u> ----- ----- -----.</p> <p>7. ~ 11. (현행과 같음)</p> <p>12.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u></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u>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u>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u>공영주차장</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② (생략)</p> <p>③ <u>여행주차장</u>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여성우선주차장</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p>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여성우선주차장 ----- ----- ----- -----.</p> <p><u><신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u></p> <p>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u><신설> <별도 5></u></p> <p>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p> <div data-bbox="813 1108 1385 1877" style="border: 2px solid gray;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2em; margin: 0;">나눔카</p> <p style="font-size: 2em; margin: 0;">전용주차</p> </div>